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7. 9 선고 2019가단113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나55190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7. 9 선고 2019가단11342 판결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B

변론 종결2020. 6. 4.

판결 선고2020.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피고에게 화물을 운송시킬 목적으로 호퍼트레일러(새시)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안전교육에 불참하여 2019. 6. 10.부터 피고에게 배차할 수 없게 되어 무상으로 임대한 호퍼트레일러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2019. 6. 10.부터 2019. 11. 30.까지 호퍼트레일러를 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수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 운송 목적으로 호퍼트레일러를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 및 피고가 운송을 거부하였거나 원고가 피고의 운송거부를 이유로 호퍼트레일러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사 C이 피고에게 호퍼트레일러의 매매를 소개하였다가 하자가 발생하자 매매대금 반환시까지 원고가 보유한 호퍼트레일러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오윤경